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

01.

소득인정액 =

가.

구분	선정 기준	기준액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	29%	_*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의료	40%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주거	43%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2,936,333
교육	50%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3,414,340

* 생계급여의 경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중위소득 3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예기

70 2 가

, ,

중위소득이란?

가

가

02.

ا *ح* اح

부양의무자의 범위

, 가 · · ·



"급여 항목별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생계급여



가

폐시

60 4 가 1,273,516

673,520

의료급여



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1 사 (의원)	2시 (병원)	5사 (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
	외래	1,000	1,500	2,000	500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	15%	15%	500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한함

1종

가 ,

, 1

생계·의료급여 관련 상세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mark>더! 많은 분들에게 꼭!</mark> 필요한 도움을 드립니다."

주거급여

가 , 가가 .



임차가구

가 . .

기준임대료 (:)

	1급지 (서울)	2 급 지 (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1인 가구	195,000	174,000	143,000	133,000
2인 가구	225,000	195,000	154,000	143,000
3인 가구	266,000	236,000	184,000	174,000
4인 가구	307,000	276,000	215,000	195,000

자가가구

주택 개량 지원 내용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등	지붕, 욕실 등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교육급여 지원 내용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
<i>초/</i> 중학생	부교재비	1명당 39,200원	연 1회 지급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1명당 53,300원	1,2학기 분할 지급
	교과서대	1명당 131,300원	연 1회 지급
고등학생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분기별(3·6·9·12월) 지급
•	입학금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교육급여 관련 상세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01 소득이 늘어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가

(· · ·)



02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기초생활을 보장할 뿐 아니라,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하게 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세요!

지원절차

01 상담 및 신청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02 사실조사 및 심사 가

30

(60

가)

04 급여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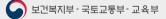


문 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읍 · 면 · 동 주민센터

탄생의 순간부터 행생동안

사망에주기선 맛충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신청 장소

읍 · 면 · 동 주민센터

